

## 2. 거주외국인을 위한 공익활동프로그램기획

### ◆ 외국인관련 공익인권활동 계획서 (강동일)

<p>1. 연구과제명</p>	<p>불법 체류 근로자의 법적 보호</p>
<p>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p>	<p>불법체류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고, 정상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교란했기 때문에 당연히 벌칙적용과 강제출국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법 체류 근로자 역시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고, 불법체류 근로자는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를 당하여도 그 신분상의 특성 때문에 그 피해를 호소하기가 어려우며, 이러한 불법 체류 근로자의 처지를 악용하고 있는 고용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아졌다. 그리고 불법체류 근로자가 이토록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정부가 그들의 유입이나 국내체류를 방임해온 측면이 크며, 어쨌거나 그들이 국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보호가 필요하고, 그러한 법적보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사후구제방안이 논의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p>
<p>3. 연구의 내용 및 방법</p>	<p>(1) 연구의 내용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법적보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사후구제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연구의 내용은 불법 체류 근로자들의 사후구제방안이 될 것이다.                  1) 공무원의 통보의무의 유예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력하는 것이 노동행정의 역할이지만, 불법체류 근로자는 강제출국의 위험 때문에 근로감독기관에 곧바로 호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77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불법체류자 등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노동행정을 맡은 공무원이 출입국관리당국에 통보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소송수행의 보장                  불법체류 근로자가 산업재해나 임금체불과 같은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에는 의문이 없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강제 출국되어 소송당사자로 될 수 없다면 소송수행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따라서 불법 체류 근로자의 소송수행의 보장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p> <p>(2) 연구의 방법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검토하고, 불법 체류 근로자의 사후구제방안을 모색한다.</p>

◆ 외국인관련 공익인권활동 계획서 (손민수)

<p>1. 연구과제명</p>	<p>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의료 혜택의 문제점</p>
<p>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p>	<p>'외국인을 찾아보기 힘든 외국인 지정병원에 대한 제도의 개선'                  체류외국인에 비해 너무도 적고 까다로운 진료절차 때문에 외면 받는 외국인 무료 진료 지정병원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지정병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는 해당 제도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지정병원은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여성 결혼 이민자와 자녀 등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흔히 외국인 무료 진료병원 지정제도라고도 불리는데, 지원혜택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정부가 지정한 전국 총 64곳에 한정되며 국내 입국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을 앓고 있을 경우 해당 질병이 국내 입국 후 얻은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병원들은 하나같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통역의 어려움, 노숙인은 병원 이미지에 홀지 않아 환자 받기가 꺼려진다는 입장이고, 진료 건수 또한 저조하다. 그 이유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비자 기한의 만료로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면서 신분 노출을 꺼려 사실상 지정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것. 또 의료급여 신청이 까다롭고 후불제여서 병원 수익엔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병원마다 적극 홍보에 나서지 않는데 있다. 무엇보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정병원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것을 지정병원에 맡겨 버리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다. 한마디로 병원 수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한 까다로운 진료절차에 진료병원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정 병원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도와주고 싶어도 진료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도와주기 힘든 상황이다"며 "인도주의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보다 현실에 맞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지적하였다.</p>
<p>3. 연구의 내용 및 방법</p>	<p>1. 외국인 무료진료 지정병원의 수 부족 (대상 기준의 완화)                  그럼 외국인 무료진료 지정병원의 수는 왜 그렇게 적을까. 이는 까다로운 신청절차에 있다. 실제 최근 외국인 무료진료 사업을 위해 지정병원 신청을 추진하던 충북의 한 종합병원은 등록신청이 까다로워 포기하고 말았다. 병원 관계자는 "무료 진료 봉사활동은 적지 않게 했지만 환자유인 행위 등 의료법 위반은 아닌지 걱정되어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활동으로 처리하다보니 재무제표 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정병원 한 관계자는 "대상병원 신청절차나 진료 대상자 기준을 완화 하지 않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기 힘든 상황이다"며 "특히 신분노출을 꺼려 병원보다 약국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는 법정전염병이 노출되기 쉬워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100% 지원한다는 생각이었으면 지정병원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 진료 대상 기준 (대상 기준의 확대)                  진료 대상 기준도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에 갖고 있던 질환(지병)은 진료 대상이 안 된다. 외국인 출입증 등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 하고 고용주의 사실 확인서도 첨부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다문화 가정)는 국적을 취득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3. 병원의 입장 고려 (국가 지원의 필요성)                  통역인원의 부족과 병원 이미지의 문제, 그리고 체류초과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3번 문제의 경우(체류초과자)는, 복지부 공공의료팀의 한 관계자는 "일부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부 단속을 우려해 지원혜택을 기피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절대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을 계획이니 안심하고 혜택을 받아도 된다"고 강조 하였지만 병원의 경우 의료문제로 확산될까하는 염려도 적지 않다.                   위 점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대상 지정 병원의 현실적인 고충을 전화(혹은 방문)으로 조사하고, 당국의 입장과 혹시 상정된 개정안 여부 조사 및 발전 제도의 개선과 입법안에 대해 연구한다.</p>

※ 외국인 무료 진료병원 등록 인증 절차

외국인 무료 진료병원으로 등록 인증을 받으려면 △법인의 경우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재무제표 상에 드러나야 한다. △개인의 경우 무료진료 실적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사업계획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설기간 2년 미만 의료기관도 시·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가능하다. △시·도는 의료기관의 첨부서류를 확인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의료기관에 인증결과를 통보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사업 인증기간은 1년간 유효하다.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총 64개)

(2010.5.30 일자)

시·도	의료기관	비고	시·도	의료기관	비고
서울 (6)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000	강원 (5)	원주의료원	033-761-6911
	서울의료원	02-3430-0200		삼척의료원	033-572-1141
	국립중앙의료원	1588-1775		강릉의료원	033-646-6910
	시립동부병원	02-920-9114		속초의료원	033-632-6821
	마리아수녀회도티기념병원	02-351-2300		영월의료원	033-370-9101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02-863-9966		청주의료원	043-279-0114
부산(1)	부산의료원	051-507-3000	충북 (3)	청주한국병원	043-222-7000
대구(1)	대구의료원	053-560-7575		충주의료원	043-841-0114
인천 (6)	인천의료원	032-580-6000		충남 (5)	천안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032-280-2114	서산의료원		041-689-7000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032-540-9114	홍성의료원		041-630-6114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1577-9199	이화여성병원		041-579-1400
	성세의료재단 성민병원	032-580-8551	공주의료원		041-855-4111
	검단 탐종합병원	032-590-0114	전북 (5)		전북대학교병원
광주 (4)	광주기독병원	062-650-5000		예수병원	063-230-8114
	전남대학교병원	062-220-5114		남원의료원	063-620-1114
	첨단종합병원	062-601-8000		부안성모병원	063-581-5100
	이연안과병원	062-380-5800		군산의료원	063-472-5000
대전 (5)	대전성모병원	042-220-9114	전남 (3)	순천의료원	061-759-9114
	충남대학교병원	042-280-7114		강진의료원	061-433-2167
	대전중앙병원	042-670-5114		목포시의료원	061-260-6400
	대전선병원	042-220-8000	경북 (6)	상주적십자병원	054-534-3501
	울지대학병원	042-611-3000		포항의료원	054-247-0551
경기 (6)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031-888-0114		김천의료원	054-432-8901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031-828-5000		안동의료원	054-850-6000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031-940-9100		울진의료원	054-785-7000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031-639-4800		안동성소병원	054-857-2321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031-8046-5000	경남 (6)	마산의료원	055-249-1000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031-539-9114	진주의료원		055-771-7000	
제주 (2)	제주의료원	064-720-2222		통영적십자병원	055-644-8901
	서귀포의료원	064-730-3106		거창적십자병원	055-944-3251
			한국산재의료원창원병원	055-282-5111	
			창원파티마병원	055-270-1000	

◆ 외국인관련 공익인권활동 계획서 (임공)

<p><b>1. 연구과제명</b></p>	<p>지속 가능한 공익 NGO 연구(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활동을 중심으로)</p>
<p><b>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b></p>	<p>NGO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정부와 공조식에 참여하지도 않고 영리를 추구하지도 않는다.(이 부분이 문제삼고 싶은 부분인데 적극적 이윤추구와 목적달성을 위한 영리사업을 통한 비영리활동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익 글로벌 NGO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 NGO는 사회조직으로 이타적, 일반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인식한다. 지구시민사회에서 갈수록 범조직화, 탈국가화 되는 사회현상을 규율하는 법제도와 조직정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나라 거주외국인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목적의 정책 및 민간기구 캠페인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올바르게 시행 될 수 있다.</p> <p>따라서 BUND, MISEROR, WEED 등과 같은 비정부기구들의 연구를 통해 거주외국인법률문제클리닉에 실질적인 행동력과 물적 자양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연구해보고자 한다.</p>
<p><b>3. 연구의 내용 및 방법</b></p>	<p>국내, 외 NGO 현황에 관한 문헌 고찰 및 인터뷰, UN 및 국제기구 들의 정책 및 활동 탐구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되, 실질적인 활동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p>

◆ 외국인관련 공익인권활동 계획서 (손민수)

1. 연구과제명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맹점과 대안책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p>고용허가제는 정부가 2004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5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현행 국적법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게 되고 나아가 한국으로 귀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고용허가제 상 최장 체류 기한이 6년에서 2009년 5년 미만으로 단축됐다. 일손 부족은 메우되 이주민이 국내에 눌러앉는 '정주화(定住)'는 막자는 취지다. 정주는 곧 이민 허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또 다른 국가 정책적 이슈가 되는 것은 시기상조란 판단에서다. 고용허가제로 온 노동자들은 일단 본국에 돌아가면 한국에 다시 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에서 돈을 벌려는 '코리안 드림'을 꾸는 이들이 많은 탓에 이들이 다시 본국에서 경쟁을 뚫고 한국에 와 돈을 벌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은 6년간 한국에 살면서 우리말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면서 한국인들이 꺼리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이른바 '3D' 업종에서 기본 근로시간을 넘겨가며 일해 일부 제조업과 농업 분야를 지탱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가 사양 산업을 연명하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외국 인력을 사용과 함께 이 분야 산업의 구조조정 계획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덕분에 한국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일부나마 국제 경쟁력도 갖추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p> <p>■ 올해 4천149명, 내년 2만9천975명 출국 고용허가 시간이 다함에 따라 올해 안에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 인력은 4천149명이다. 내년에는 2만9천975명, 2012년에는 4만4천578명이며 이후 매년 4만~5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귀국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고 경기 회복에 따른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제조업 분야에 8천600명, 농축산업에 1천100명, 어업에 300명 등 모두 1만 명을 더 데려오기로 지난 7월 초 결정했다.</p> <p>■ '3 플러스 3' 에서 '3 플러스 2' 로 변경 고용허가제 시행 당시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3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 모두 재고용을 원하면 한 달간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다시 3년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 달간 출국해야 하는 것은 현행법상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돼 해당 노동자가 정주(定住)할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다.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정부 정책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이들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달간 출국해 한국밖에 머물러야 한다는 규정은 노동자나 사업주 모두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비율을 요소라는 지적에 따라 3년을 일하되 재고용이 합의되면 곧바로 2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3 플러스 2' 제도로 바뀌어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다.이에 따라 2007년 입국한 노동자부터 '3 플러스 2' 제도가 적용돼 3년을 일한 후 노동자와 고용주가 원하면 최장 2년까지 더 일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2년으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심사 및 서류 처리 절차에 따라 1년 10개월가량 머물 수 있도록 운용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p> <p>■ 작업장 변경 금지는 큰 '논란거리' 고용허가제 상의 큰 논란거리는 근로자가 작업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고용허가제로 인력을 '수입' 할 수 있는 업종은 농축어업과 제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 동포로 방문 취업 비자를 얻어 '특례 고용허가'에 따라 일하는 인력에 한해 예외적으로 건설업, 서비스업 종사를 허용하고 있다. 많은 시민인권 단체들은 이 같은 취업 업종 제한 탓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주에 종속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사각지대에 몰린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업종 제한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근원이 된다고 비판한다.</p>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p>1. 노동허가제의 검토 급속히 다문화 하는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현재 한국과 같은 형태의 고용허가제를 취하는 국가는 대만, 영국, 미국 등이고 업종 제한을 두지 않고 외국인이 와서 일할 수 있게 한 '노동허가제'는 프랑스와 독일이 잘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허가제도 검토할만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고용 허가 대신에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 '노동허가제'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례 고용허가제에 따라 방문 취업한 29만4천4명(6월말 현재)의 외국 국적의 한국 동포는 업종 제한을 사실상 받지 않고 일하는 반면, 일반 고용허가제 아래 일하는 16만4천94명은 취업 업종에서 차별당한다는 지적 또한 있다.</p> <p>2. 현장 방문과 실태 조사 작업장을 방문하여 고질적인 임금 / 작업장 환경 또한 확인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책에 대해 좀 더 발전적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p>

◆ 외국인관련 공익인권활동 계획서 (박재홍)

1. 연구과제명	찾아가는 외국인 법률상담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결혼이민 후 이혼한 자, 미등록외국인근로자 등 상담기관을 찾아오기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li> <li>2. 쉼터, 이주민센터 등 요청지역을 찾아가서 원스톱 상담 실시</li> <li>3. 법률가들의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감, 문제해결능력 향상</li> <li>4. 법률가-활동가 네트워크 생성 및 유지</li> </ol>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 상담기관을 통해 '찾아가는 법률 상담' 수요 조사</li> <li>2. 피상담자 사전교육 실시 : 상담 시 유의점, 외국인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문제해결방안 및 그 절차 등</li> <li>3. 인터넷 가능한 노트북, 프린터, 팩스, 인터넷 전화 등을 구비한 차량 및 시설 확보</li> <li>4. 상담 활동가 및 통역자와 함께 방문하여 법률상담 진행</li> </ol>

◆ 외국인관련 공익인권활동 계획서 (박재홍)

1. 연구과제명	학교에 찾아가는 변호사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등 ~ 고등학교 특별수업을 활용한 학생 인권법 교육</li> <li>2. 학생들이 의문을 가지고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li> <li>3. 법을 배우기 보다 법이 담고 있는 인권의 정신을 느끼는 목적의 교육</li> <li>4. 교육자인 변호사 및 로스쿨생의 교육 실습을 통한 인권이식 고양</li> <li>5. 학생들이 인권을 찾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li> </ol>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의 내용 국제인권기준, 표현의 자유, 학생의 권리, 우리 사회 소수자의 권리의 내용과 그에 대한 태도, 권리 구제방안 등 사례 소개, 토론, 참여프로그램 실시 후 평가로 진행</li> <li>2) 교육의 방법 인권활동가와 함께 교육프로그램 제작 교과부 및 각 학교의 지원을 받아 1강 1교실을 원칙으로 교육 실시 교육희망 학급 수요 조사, 강사와 교육 희망 학교 연결</li> </ol>

◆ 외국인관련 공익인권활동 계획서 (황준일)

<p><b>1. 연구과제명</b></p>	<p>결혼이민자 가정 기초 생활 수준 향상</p>
<p><b>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결혼이민자 가정이 사회에서 계속 이방인처럼 취급되며 일반 국민이 누리는 기초적인 권리조차도 쉽게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li> <li>- 생활의 기초적인 영역인 보건, 교육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할 필요성 및 현실적으로 제한된 직역에서만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저소득층에 머물게 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li> </ul>
<p><b>3. 연구의 내용 및 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률 개선을 통해 각종 사회보험 영역에 거주이민자 가정을 포용.</li> <li>- 결혼이민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가입 적극 권장 및 법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li> <li>- 기초 의료비 지원 및 입국 후 건강검진 등 지원</li> <li>- 결혼이민자 등의 의무 강화 : 체류 요건 혹은 신분자격증 취득 요건으로 한국어 능력 및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의 이해를 필요. 법령개선을 통해 그들 스스로 한국에 동화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li> <li>- 거주외국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이 담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li> <li>- 정책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성별, 출신국, 거주지역 등을 감안한 적합한 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 관계 기업에 채용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li> <li>- 결혼이민자 자녀를 국내 아동,청소년 보호영역에 전면적으로 포함.</li> <li>-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및 공립학교 진학시 우선진학 배려.</li> </ul>

## ◆ 외국인관련 공익인권 활동 계획서 (김상헌)

<p><b>1. 연구과제명</b></p>	<p>5명의 로스쿨생활동이 제주도의 거주외국인정책에 미치는 영향/ 참여와 인식의 변화</p>
<p><b>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b></p>	<p>최근 한국으로의 외국인의 이전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한류라는 한국의 이미지의 힘을 입은 점도 크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한국의 삶은 결코 쉽지않은 않다. 이것은 한국특유의 배타적인 성향도 일정부분 작용하는바 제주 지역이 타 지역보다 포용성이 크다고는 여겨지지 않기에 본지역에서 외국인 관련 법률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확대시행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제주에는 몇 개의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지만 일원화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외국인에 대한 상담에 있어서도 젊은 학생그룹의 지원이 한국의 차후 외국인정책에 대한 신뢰를 부여해줄 것이다. 이에 로스쿨생은 친근감있는 조연자이자 친구가 될 수 있다. 일회적인 상담자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지원군들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거주 외국인의 한국정책과 함께 그들도 동시에 성장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것은 5명의 법학적 지식과 봉사지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원의 집중적인 활동이 어떠한 성과를 이루는가는 리걸클리닉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로펌에서의 지속적인 공익활동이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인 법률서비스의 장점이자 단점은 애프터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주외국인관련 인권분야 활동은 애프터서비스가 지속적이라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외국인관련정책이 오히려 자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내용도 외국인이 자국민을 해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외국인지원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 5명의 인권분야활동은 제주지역사회의 외국인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기에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p>
<p><b>3. 연구의 내용 및 방법</b></p>	<p>5명은 express force라는 신념으로 활동한다. 이는 급행이란 단어와 투여적 힘이라는 단어의 조어이다. force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의 기본적인 태도를 말하는데 fidelity 충실, organic or organization 조직적인, reliability 믿음 concentration집중, equality 평등을 이른다. 거주 외국인의 한국정책에는 자녀의 한국에의 적응이 가장 우선한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교육부문에서 우수한 여건을 이룰 수 있도록 학습지원을 이행한다. 도내지원 및 체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때 법률구조의 문제를 병합하여 원스탑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정치적 평등의 문제로 조례로서 거주외국인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하고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부여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한다. 제주도만의 인권조례를 입안하여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개방적인 고도의 인권정책을 추진한다. 도민 또는 제주대학교 학생의 거주외국인 친구 및 멘토되기 운동을 시작으로 거주외국인도 한국사회의 일원임을 느끼도록 한다. express force를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설정한다. 거주외국인에 이르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추방정책을 일정부분 시정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의 확대를 제주도에서 이룬다. 이러한 부문은 국회의원 및 지역 정치가와 도지사 등 유력인사와의 협력이 실질적인 효용으로, 거주외국인의 전폭적인 지지가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할 것이다. 상담외국인의 거주문제가 있을 경우 제주대학교 내 국제교류회관의 게스트하우스의 활용방안을 모색해본다.</p>



◆ 아이디어

1. 트위터=정책에 민주적 참여=주체적 참여=법률상담 바로 지원, 인터넷 효과를 뛰어넘음.
2. 다문화정책방안을 그들이 설정, 참여,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정책참여
3. 합법적인 체류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 제정  
급식 의료 법률
4. 찾아가는 사랑의 편지활동 백지 속에 자국어이든 한국어이든 쓸 수 있도록 함.  
일주일에 한번 수거함(편지의 환수율 연구와 법률적 서비스의 상관관계)  
한번만 거두어가면 터치 바이 터치로 인하여 컴퓨터나 방문이 가능.  
인간적인 부분을 거주외국인도 잘 알고 있다. 외국인일수록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감성적인 접촉에서 시작하여야 함
5. 법률상담센터는 축제의 장으로 교회나 절처럼 늘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로스쿨생이 적합할 수 있음.  
센터분위기가 실력을 말하지 않는다.
6. 독일변호사보험제도의 외국인에 한하여 적용문제/그러나 보험낼 돈이 있나?  
자기 집의 가장 친한 종합상담사/제주도에 한하여 외국인등록시 담당변호사제를 실시,  
20세미만의 외국인은 일단 적용제외, 담당변호사는 신청한 변호사에 한하여(이에 대한 유용성 설파를 로스쿨생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외국인과 담당변호사의 직접적인 연락체계검토(지역 리걸 클리닉이든 로스쿨생 가능), 로스쿨생은 거주외국인의 상담사례가 들어오면 담당변호사와 함께 일을 처리한다. 이는 공익봉사활동적 측면이 강함, 거주외국인이 정착에 성공한 후 소정의 자발적 비용도 가능할 것이다./프로보노가 무료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로스쿨생이 졸업 후 거주외국인관련 담당변호사로 선순환됨/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제적용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기존 변호사의 관심도 파악 가능/ 담당변호사 제가 확대되고 거주외국인에 홍보가 되면 자발적 비용에서 월 만원정도의 실비변상적 보험제 실시
7. 제주도내 지원센터는 시설이 일단 열악함  
새로운 시설의 개선 벽화 각 나라의 문물의 결합 도의 지원이 절실  
법률지원이 실질적이었는가에 대한 리서치
8. 외국인자문위원회의 도의회내의 설치, 분과위원회는 의미 있을 것 같음.
9. express heart/ honest 정직,equality 평등,ardent or energetic 열정,reliability 신뢰  
tolerance 포용